

2010년도 농업연구센터(ARC) 지원계획 공고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하여 “2010년도 농업연구센터(Agriculture Research Center)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을 통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사업특성

- 산업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초 연구 분야의 장기 지원
-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농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고부가 신산업 핵심 기술 확보 및 우수 전문 인력 육성

2. 지원 분야 및 내용

(1) 자유응모

- 지원분야 : 농업 응용 가능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
- 주관연구기관 : 석·박사 과정 설치 대학
- 선정센터 : 2개 센터 내외 선정

(2)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원예(채소류) 육종 분야 (붙임1 참조)
- 주관연구기관 : 원예 육종 분야 석·박사 과정 설치 대학
- 선정센터 : 1개 센터 내외 선정
 - * 선정평가 결과 지정공모형 1순위와 자유응모형 3순위, 지정공모형 2순위와 자유응모형 2순위와의 최종 점수 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센터를 선정할 수 있음

(3) 공통사항

- 지원규모 : 센터당 연간 1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7년(3+4년) + 3년(후속 산업화 연구)
 - 지원 개시 후 3년차 단계평가 시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중단
 - 최종평가(7년) 후 상위 35% 또는 평가 점수 90점 이상의 센터는 후속 산업화 연구 지원

3. 센터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센터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밀접히 관련된 유기성 높은 2~3개의 핵심과제로 구성

□ 주요연구원 구성

- 주요연구원은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핵심·세부연구책임자로 정함
- 핵심 및 세부과제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정부출연(연)/공공(연)/기업체부설(연) 책임연구원급으로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정함
- 주관연구기관(전체의 50% 미만), 타(단과)대학, 기타 연구소, 기업 등 8명 내외로 구성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 10인 이상)가 갖추어진 기업체 참여시 우대 점수 부여(2점)

4. 신청 자격 및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 석·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 센터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센터의 핵심연구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센터지원이 종료(7년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주요연구원 공통사항

- 농림수산물(농진청, 산림청 포함) 연구개발사업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 가능, 이 중 주관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까지 참여 가능

* 다만 기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잔여 연구기간이 ARC 사업 개시일 ('10. 8. 1)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또는 정부출연금이 연간 8억원 이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ARC 센터장으로 참여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

- 제재기간이 예비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 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성과지표 예시

과제 신청 시 1·2단계 성과목표는 성과지표 예시 내외에서 설정

* 연구비 적용은 센터당 지급되는 연 10억원 기준이므로 성과지표설정 시에는 각 과제당 연구비를 기준으로 설정

○ 3단계 후속 산업화 연구지원 대상은 센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화 성과지표(예: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등)로 재설정

(1) 자유응모

구 분		1단계(3년)	2단계(4년)
정량적 기술수준	특허 등록(건)	7	9
	SCI 논문(편)	57	76
	기술이전(건)	-	3
우수연구인력	박사(명)	8	11
	석사(명)	25	34

- 참고자료 :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중 기초과학연구사업(농림수산분야) 성과 분석
- 적용율 : 1억원 당 특허등록 0.22, SCI 논문* 1.9, 기술이전 0.063, 박사 0.27, 석사 0.85
- * SCI 논문은 주요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IF가 3.99(교육과학기술부 우수센터 평균) 이상 수준인 경우 적용율 하향 조정 가능

(2) 지정공모

구 분		1단계(3년)	2단계(4년)
정량적 기술수준	품종보호 출원 또는 특허 등록(건)	3	5
	국내외 논문(편)	20	30
	기술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실시(건)	-	3
우수연구인력	박사(명)	10	15
	석사(명)	30	40

6.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사항

연구인력 지원

-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지원보장(해외 인력 포함)
- 신규 교수(정규직) 채용 시 센터관련 연구분야 교수의 우선 총원
- * 3년 이내 센터 연구관련 분야 교수를 총원할 경우 단계평가 시 가점 부여(3점)

연구기기 지원

- 센터 연구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3년 동안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전용공간 지원

- 센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사무실(센터장실 포함), 공동기기실, 연구실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운영인력 지원

- 센터설치와 동시에 센터 전임행정요원(정규) 1인 이상 지원

7. 신청절차 및 방법

예비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공문, 예비계획서(별첨), 증빙 자료를 온라인(www.ipet.re.kr)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0. 4. 19(월) ~ 2010. 4. 30(금) 18:00까지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요망

본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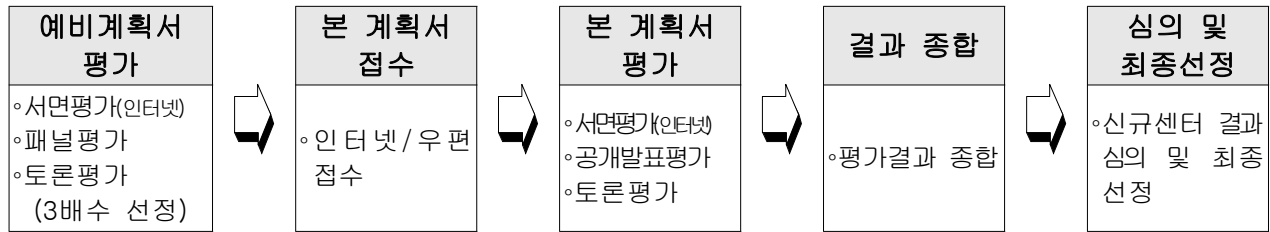
- 신청방법 : 본계획서 제출대상 센터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본계획서를 온라인(www.ipet.re.kr) 및 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6월 중(본계획서 접수기간은 향후 별도 통보예정)

접수처 : (431-81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5 우양타운 5층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실

8.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 평가항목

○ 예비계획서 : 서면평가(45%) + 패널평가(45%) + 토론평가(10%)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센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센터설치(대학/장기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10점)	10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20점)	50
	세부과제의 구성의 유기성/합리성(15점)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15점)	
사업추진역량 (연구집단의 우수성)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25점)	40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연구원의 연구능력(15점)	

○ 본계획서 : 서면평가(45%) + 공개발표평가(45%) + 토론평가(10%)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센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센터설치(대학/장기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10점)	10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설정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10점)	45
	과제별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15점)	
	연구 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10점)	
	세부과제 구성의 유기성·합리성(10점)	
연구집단의 우수성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25점)	35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연구원의 연구능력(10점)	
센터 연구진흥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5점)	10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계획의 타당성(5점)	

* 가·감점기준은 농업연구센터(ARC) 평가 가감기준 참고(붙임2)

9. 사업설명회 개최

- 2010년도 농업연구센터(ARC)의 주요 내용 등 설명
 - 일시 : 2010. 4. 9(금), 14:00 ~ 15: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홀

10. 추진일정

- 예비계획서 접수 : '10. 4. 19(월) ~ 4. 30(금), 11일간
- 예비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 '10. 5월 ~ 6월
- 본계획서 접수 및 센터 선정: '10. 6월
- 신규연구센터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10. 7월 ~ 8월
 - * 상기 일정은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문의처 및 행정사항

- 문의처
 - 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2)500-2453~4
 - 지정공모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02)500-1848~9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실 : 031)420-6746
-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1] 지정공모 분야 RFP

센터명	육종연구센터
과제명	※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억원 내외 ○ 최대 7년(3+4년) + 3년(후속 산업화 연구)간 지원
<p>▶ 최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종분야 R&D 장기지원을 통한 핵심기반 기술 확보 및 우수 육종인력 양성 <p>▶ 전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부터 산업화연구까지 미래유망 기술의 전주기적 R&D 수행 ○ 교잡육종 분야의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자업체(개인육종가 포함) 교육훈련, 산·학·연 기술협력, 학술활동, 국제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p>▶ 지원분야 및 중점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분야 : 원예(채소류 육종) 분야 ○ 중점기술 : 교잡육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육종기술은 교잡육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융합하는 수준으로 접목(분자육종기술이 주가 되는 과제는 지양) ○ 중점품목 : 수출 전용 품종 및 수입 대체 품목 3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용 품종은 대상국가의 시장여건분석을 전제로 한 수출전략을 명시하고, 수입대체 품종은 품종개발이후 보급확대(국산점유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채소류 중심) 육종 분야에 석·박사 과정 개설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연구원 수는 8인 내외로 구성하되, 분자육종 전공자는 2인 이내로, 주관기관 소속 주요연구원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구성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참여업체의 연구원을 각 세부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학생은 연간 1개월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 하고, 실습결과는 대학 자체평가 ○ 석·박사 과정을 마친 연구원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시 ※ 주관(또는 협력) 대학과 과제참여 산업체간 전문인력채용 MOU 체결 등 ※ 1단계(초기 3년)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을 2단계 또는 후속사업화지원 사업기간 중 산업체로 집중 공급 ○ 연구과제와 별도로 교잡육종분야의 산업체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주관 대학에서 산업체 인력에 대해 위탁교육 실시(연간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교육기간 등 세부내용은 수요조사결과와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편성 	

[붙임2]

농업연구센터(ARC) 평가 가감기준

구 분	기 준	적용기간 (통보일 기준)	가·감점
가점부여 항목	농림수산물(농진청, 산림청 포함)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선정평가 시)	2년	3점
	농림수산물(농진청, 산림청 포함)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활용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선정평가 시)	2년	3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 10인 이상)가 갖추어진 기업체 참여시(선정평가 시)	-	2점
	3년 이내 센터 연구관련 분야 교수를 충원할 경우 (단계평가 시)	-	3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2점
감점부여 항목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성과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주관연구책임자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3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2점
가점부여 원칙	가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감점부여 원칙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